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청 인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변 경 사 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7.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p>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18,000원)</p>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